

보도시점 2026. 5. 17.(일) 12:00 / 배포 2026. 5. 15.(금) 08:30  
< 5. 18.(월) 조간 >

## 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 5월 17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 (주)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주)엔씨건설(이하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①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②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③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 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징금), ②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시정명령, 과징금), ③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경고),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태료)

\* 케이알산업 : 2억 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 3억 1,200만 원, 엔씨건설 : 1억 6,000만 원

\*\* 엔씨건설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 2025년 사고사망자 총 605명(573건) 중 286명(267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고용노동부 2026. 3. 31. 발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기준)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였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 3개 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알산업은 2018. 7. 1. ~ 2025. 5. 31.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표1)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 한다”,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 4. 20. ~ 2025. 7. 10.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하였고,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엔씨건설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고, 그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3개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 <붙임> 사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4-200-5002)
	하도급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옥 (044-200-5018)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담당자	조사관	최원준 (031-8090-402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담당자	조사관	배민성 (042-481-8023)



**1****법 위반 내용****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 4. 20. ~ 2025. 7. 10.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6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 엔씨건설은 2024. 6. 5 ~ 2025. 3. 21. 기간 동안 14개 수급사업자에게 15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 ▶ 2개사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 케이알산업은 2018. 7. 1. ~ 2025. 5. 31.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1건의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케이알산업 하도급거래 계약서 상 특약조항

연번	유형	특약 내용
1	민원 관련 비용 및 책임 전가 약정	계약조건 제4조(권리와 의무) 제7항 “을”은 본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등을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2	산업재해 관련 비용 및 책임 전가 약정	계약조건 제16조(안전관리) 제1항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재해발생 시에는 “을”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의 해석을	계약조건 제18조(분쟁의 해결) 제1항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의 쌍방이

연번	유형	특약 내용
	우선하도록 하는 약정	협의하되, “갑”의 해석을 우선한다.

□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11건의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특약조항

연번	유형	특약내용
1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 이익 제한 약정	계약서 본문 제21조(대금지급) 2. 갑은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일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사의 특수성,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을 넘지 못한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
2	계약사항 이외의 수정 추가공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계약서 본문 제3조(하수급인) 4. <u>을</u> 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
3	계약사항 이외의 수정 추가공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계약서 특약 제32조(특약사항) 1. <u>계약금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u> 3) <u>시공 중 발생하는 경미한 공사 분</u> 2. 기성부분의 인수 및 정산 6) <u>공사 중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은 계약금액의 3%(일부 계약서는 5%)이내는 “을” 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수용하여 시공한다.</u>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
4	산업재해, 민원처리 관련 비용 전가 약정	계약서 특약 제32조(특약사항) 3. <u>민원현황(일부 계약서는 “4. 민원현황” ) “을”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공사상 민원은 “을” 의 부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 이 민원해결에 태만하여 민원처리가 늦을 경우 “갑” 이 먼저 처리하고 ‘을’ 에게 공제 한다.</u>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
5	산업재해, 민원처리 관련 비용 전가 약정	안전관리약정서 제7조 1. <u>상기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을” 이 부담하고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을” 이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는 경중에 따라 (표1)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한다.</u> 2. “을” 은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연번	유형	특약내용
		<p>3. “을”은 “을” 소속의 근로자 또는 “을”이 임대 사용하는 장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 재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갑”의 재산이나 인명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p> <p>제8조</p> <p>1. 제7조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 소송 절차는 “을”의 비용으로 “갑”이 이를 수행하며 (후략)</p> <p>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p>
6	인·허가, 환경관리 등 비용 전가 약정	<p>계약서 특약 제32조(특약사항)</p> <p>4. 제반인허가</p> <p>“을”은 공사상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갑”은 필요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p> <p>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p>
7		<p>계약서 특약 제32조(특약사항)(일부 계약서는 “9.”)</p> <p>7. 당해 공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건임. (미처리 시 “갑”측 처리, “을”측 공제)</p> <p>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p>
8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약정	<p>계약서 특약 제32조(특약사항)</p> <p>11. 물가변동 없음.</p> <p>서교동 363-1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中 기계설비/습식/조경/포스트텐션공사 1건</p>
9		<p>계약서 특약 제32조(특약사항)</p> <p>10. 제공된 도면을 근거로 제출한 계약내역서 외 추가 증액 없음.</p> <p>송정동 72-18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中 노출콘크리트면 마감공사 1건</p>
10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약정	<p>안전관리 약정서 제8조</p> <p>1. 제7조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경우 (중략) 소송의 확정 또는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갑”은 “을”의 공사 기성금 중에서 <u>예상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u></p> <p>2. 비록 합의보상 후에라도 추후 사태 악화로 추가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기성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p> <p>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p>
11		<p>수급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b>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b></p> <p>계약서 본문 제19조(손해의 부담) <u>을은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부담한다.</u></p> <p>이 사건 하도급거래 전체</p>

□ 엔씨건설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엔씨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특약조항

연번	유형	특약 내용
1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 이익 제한 약정	계약조건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계약체결 후 그 이행을 위하여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u>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각각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일체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없다.</u> 다만,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갑”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 같은 비율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갑”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할 경우 <u>조건없이 일체 이를 변경(조정)할 수 없다.</u>
2		계약조건 제19조(선급금) ① “갑”과 “을”은 계약 후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조건부 없이 이를 수용(응)해야 한다.
3	산업재해 관련 비용 및 책임 전가 약정	<b>계약조건 제23조(안전관리) ③</b> “을”은 계약 후 즉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일괄가입 하여야 하며, 가입 즉시 가입확인서(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u>본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을”이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u>

▶ 3개사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공정위는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 엔씨건설의 하도급대금연동에 관한 사항 미기재 서면 발급 행위, 케이알건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씨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과징금) 공정위는 케이알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하여 총 2억 57백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36백만 원)와

부당특약 설정 행위(276백만 원)에 대하여 총 3억 12백만 원, 엔씨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하여 1억 6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경고) 공정위는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을 미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 (과태료) 공정위는 엔씨건설이 하도급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 서면에 미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3**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등을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범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사업자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

**1. 3개 사업자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업체명	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매출액	자산총계	영업이익	설립일
(주)케이알산업 (*24 토목건축공사업 55위)	2021	524,331	632,680	585,298	20,710	1987. 3. 31.
	2022	537,580	814,687	644,485	25,030	
	2023	606,701	926,039	716,281	22,450	
	2024	671,365	725,469	774,964	24,593	
(주)다산 엔지니어링 (*24 건축공사업 33위)	2021	49,447	46,448	8,297	543	1999. 10. 22.
	2022	49,544	49,227	11,982	389	
	2023	61,627	56,239	8,887	-3,698	
	2024	56,143	53,022	11,879	1,094	
(주)엔씨건설 (*24 건축공사업 126위)	2021	1,153	7,679	1,893	648	2019. 1. 31.
	2022	7,859	45,710	5,302	1,409	
	2023	32,086	41,848	9,953	957	
	2024	34,351	36,082	20,613	1,196	

※ 피십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http://www.kiscon.net))

**2. 관련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